

#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인권 담당

발 신 : 전국시민사회단체

제 목 : [보도자료]폭력 주범 재벌과 폭력 목인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문 의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010-3168-1864)

박점규(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010-9664-9957)

날 짜 : 2018. 8. 31. (총 12쪽)

## 기아차는 즉각 폭력행위 중단하라!

폭력 주범 재벌과 폭력 목인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

1.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절차에 따른 파업을 벌이는 동안 사측의 폭력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과 21일에도 기아차 사측은 관리자 수백 명을 동원해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한명의 노동자가 척추 뼈가 부러지기까지 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김수익 지회장이 목에 줄을 거는 처참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 기아차 사측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재벌의 불법행위와 불법파견에 대해 눈감아주고 용인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아현대차그룹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이 2010년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불법파견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얼마 전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가 권고한 것을 바탕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아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 비정규직에 대한 강제전적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아차도 정부도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측은 폭력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폭력 중단과 강제전적 중단을 요구합니다.
4. 아래에 전국 00개 단체가 기아차의 폭력행위와 강제전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첨부합니다.

### <첨부자료>

- 기아차 불법파견 관련 일지
- 기아차 화성공장 파업에 대한 사측의 폭력행위 경과
- 전국 78개 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폭력 주범 재벌과 폭력 묵인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기자회견 순서**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1. 규탄발언-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원자
2. 부상당한 현장 노동자 -조정우, 최정은
3.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4. 이상규 민중당 대표
5. 기자회견문 낭독
6. 청와대 요구안 전달

**<덧붙임 자료1>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농성파업 상황일지**

2018년 8월 30일

- 09시 1직 4시간 부분파업 돌입
- 09시 15분 민중광장 집결 후 프라스틱 공장 파업 현장 순회 시작. 기아원청 관리자 플라스틱 공장 모든 통로 막고 진입 봉쇄
- 현장진입 과정에서 기아원청관리자 집단폭력자행
  
- 09시 40분 원청관리자 뚫고 현장 진입, 그러나 지속적인 원청관리자 폭력행사, 파업 대오 침탈 시도
- 09:50 지회장 동지 “더 이성 폭력행사하면 뛰어내리겠다”며 사출기 위에서 목에 밧줄 묶고 농성 돌입. 원청관리자 폭력 일시 중단.
- 10시 10분 프라스틱 라인 전면 가동 중단
- 10시 50분 파업시간 6시간으로 확대
- 11시 00분 현대그린푸드 1직 파업 돌입
- 12시 30분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전00 조직부지회장 현장 방문 및 면담.
- 13시 50분 범퍼 조립 공정 불법대체인력 투입 저지
- 14시 00분 강제전적 잠정 중단 및 기아원청이 직접교섭에 응할 시 교섭에 응하겠다는 내용 전달
- 14시 10분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 및 미비국장, 미비부장 현장 도착
- 14시 20분 본대오와 떨어져 있던 프라스틱 범퍼 조립라인에서 불법대체인력 투입 저지 중 비정규직 조합원 8명에게 원청 관리자 100여명 집단폭행, 부상자 발생.  
※ 이동우 조합원 중상 병원 긴급후송 - 12번 척추 골절. 최소 10주이상 입원치료 진단.
- 14시 50분 구사대 일시 철수

- 15시 00분 2직 전적대상 업체 조합원 전면 파업 돌입
- 15시 00분 : 1,2,3공장 범퍼 미부착 상황 발생
- 16시 20분 2직 파업조직을 위한 현장순회시 도장3부 입구에서 원청 관리자 또 다시 진입 봉쇄. 몸싸움 발생. 현장 순회 진행 못함.
- 17시 50분 : 2직(전적대상업체 제외) 6시간 파업돌입
- 18시 00분 : 현대그린푸드 2직 4시간 파업돌입
- 20시 20분 : 8월 31일 1,2직 6시간 파업. 전적대상 업체인 도장프라스틱 전면파업 결정.
- 22시 00분 : 조립3공장 라인가동 중단(공행거 상태 가동)

#### 8월 31일

- 06시 50분 : 도장프라스틱 1직 파업돌입.
- 09시 00분 : 1직 전 조합원 파업돌입.
- 09시 00분 : 3공장 범퍼미부착 상태 가동
- 09시 30분 현재 2일차 파업농성 진행 중

## 덧붙임 자료2> 기아자동차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 1.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현황

- 1) 비정규직 전체 규모는 3개 공장 4,051여명  
(식당, 청소, 경비 포함, 2.3차 하청 제외, 2016년 1월 기준)
  - 화성: 2406명(생산관련 1781명, 식당 299명, 청소, 경비, 시설 326명)
  - 광주: 884명(생산관련 588명, 식당 137명, 청소, 경비, 시설 159명)
  - 소하: 761명(생산관련 404명, 식당 134명, 청소, 경비, 시설 223명)
  - 합계: 생산관련 2,773명, 식당 570명, 청소, 경비, 시설 708명,
  - 2.3차 하청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음(사측 자료 미제출)
- 2) 위 인원 중 조합원은 약 2,152명  
(화성 1,452명, 광주 355명, 소하리 345명, 2017년 7월 기준)

### 2. 기아자동차 불법파견(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집단소송 경과

- 1. 1차 집단 소송인원** (총계 : 514명 소송돌입)  
화성 : 290명, 광주 : 214명, 소하 : 10명
- 2. 1심 선고인원 468명 전원 승소!**
- 3. 미선고인원** : 각종 사유로 인한 소취하, 기 정규직 입사자 28명 제외
- 4. 소송돌입 : 2011년 7월 22일**
- 5. 1차 소송 조합원 1심, 2심 전원 승소 판결**
  - ▶ 2014년 9월 25일 소송 조합원 1심 전원 승소
  - ▶ 2017년 2월 10일 소송 조합원 2심 전원 승소
- 6. 2차 집단소송**  
화성, 소하, 광주 500여명 2차 집단소송 돌입  
2015년 2월 서울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 기아차 현대차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경과

- 1) 2004년 노동부 현대차 9234개 공정 불법파견 판정
  - 2) 2010년 7월 22일, 2012년 2월 23일, 2015년 2월 26일 현대차 대법원 판결
  - 3) 2011년 7월 기아차 비정규직 514명 1차 집단소송
  - 4) 2014년 9월 현대, 기아차 1차 집단소송 1심 승소
  - 5) 2017년 2월 2심 현대, 기아차 1차 집단소송 2심 승소
  - 6) 기아차 비정규직 3개 공장 500여명 2차 집단소송 돌입
  - 7) 2017년 6월 3차 집단소송 돌입
  - 8) 2018년 1월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조사 착수
  - 9) 2018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 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  
정부종합청사 앞 천막농성 돌입 (18년 7월 현재까지 농성 중)
  - 10) 2018년 5월 31일 직무유기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고발
- ▶ 현대차 대법원 판결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집단소송 2심 고등법원까지 전원 승소
  - ▶ 법원조차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15년에 이르도록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음
  - ▶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만도헬라, 파리바게뜨, 아사히글라스, 롯데캐논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그러나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음

### 1) 1차 소송

: 2011년 7월 22일 소제기

: 기아자동차 3개 공장 소송 참여 조합원 1심, 2심 전원 승소

가. 대법원 2017다9732 근로자지위확인 등(의제사건) ▶ 상고제기 당시 원고 수 : 349명 ▶ 현재 원고 수 : 271명 (화성 200명, 광주 66명, 소하리 5명)	▶ 현대차 소송인원 1차 소송 : 160명 2차 소송 : 80명 3차 소송 : 200명 4차 소송 : 105명 5차 소송 : 43명 6차 소송 : 132명 총 730명
나. 대법원 2017다9763 근로자지위확인 등(의무사건) ▶ 상고제기 당시 원고 수 : 136명 ▶ 현재 원고 수 : 71명 (화성 42명, 광주 28명, 소하리 1명)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025 (1차 추가 임금소송) ▶ 소제기 당시 원고 수 : 499명 ▶ 현재 원고 수 : 334명 (화성 : 188명, 광주 : 141명, 소하리 5명)	▶사측 3500명 신규채용발표

### 2) 2차 소송

: 2015년 2월 6일 소제기 / 소송 진행 중 (18년 9월 21일 1심 판결 예정)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677(의제사건) ▶ 소제기 당시 원고 수 : 258명 ▶ 현재 원고 수 : 187명 (화성 125명, 광주 34명, 소하리 28명)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653(의무사건) ▶ 소제기 당시 원고 수 : 339명 ▶ 현재 원고 수 : 195명 (화성 130명, 광주 31명, 소하리 34명)	

3) 3차 소송 : 2017년 5월 15일 소제기, 소송 진행 중 (5차례 심리 진행)

▶ 소제기 당시 원고 수 : 581명 ▶ 현재 원고 수 : 511명 (화성 313명, 광주 73명, 소하리 125명)
--

### 〈자동차 4사 불법파견 판결 승소 현황〉

자동차 완성 4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승소

	기아차	현대차	쌍용차	GM
대 법 원		10.7.22 (울산/의장) 12.2.23 (울산/의장) 15.2.26 (아산/모든공정)		13.2.28 (창원/모든공정) 16.6월 심리불속행기각, 전원승소
고등법원	17.2.10 소송 조합원 전원승소	10.11.12(아산/의장, 서브,차체, 엔진) 11.2.10(울산/의장) 17.2.10 전원 승소		16.1.21 (창원 /의장,물류,부품)
지방법원	14.9.25 (소하,광주, 화성 /모든공정, 전원승소)	14.9.18 전원 승소 (울산,전주,아산 /모든공정)	13.11.29 (평택 /의장,자체)	14.12.4 (창원 /의장,물류,부품)

#### 정몽구 회장, 박한우(기아차 사장) 고발

- 1) 2015년 7월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전 사내하청분회)에서 불법파견 검찰 고발
- 2) 2017년 2월 기아-현대차 비정규직, 시민 999명 정몽구 및 임직원 특검에 고발(뇌물죄)
- 3) 2017년 5월 31일 정몽구 회장, 박한우 사장에 대해 고발인 보충의견서 전달시

## 기아•현대차 모든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핵심내용

1. 현대차와 하청업체가 맺은 계약의 목적이 ‘일의 완성’ 이 아니라 ‘노동력 제공’ 자체이고, 하청업체가 고유기술, 자본, 전문적 기술, 특화된 업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파견이라고 판결.
2. 업무수행의 과정에 대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고 명시
3. 법원은 자동차회사의 첫 공정인 프레스에서부터 차를 검사하고 선적하는 일까지  
  
전체 공정이  
①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② 정규직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지며  
③ 작업결과가 누구의 작업인지 구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합법도급’ 공정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판결
4. 현대차, 현대글로벌비스, 하청업체가 1,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묵시적 근로자파견계약관계’ 라고 판단했고, 개정 파견법에 따라 2년 미만 근무한 한시하청도 정규직으로 인정했으며, 임금에 대해서도 잔업, 특근 등 개인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 3.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은폐를 위한 우대채용, 특별채용 경과

1) 특별채용 1049+36명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불법파견이며, 정규직이라는 1심, 2심 판결이 나왔지만, 기아자동차 사측은 정규직전환은커녕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중 20% 정도의 인원에만 대해서만 특별채용을 진행 중.

##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와 특별채용

1. 특별채용을 통한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 축소하려는 사측

2. 특별채용 합격 = 소송취하 = 불파소송자 줄이기  
= 체불임금 미지급 = 정몽구 불법파견 범죄에 면죄부 주기

▶ 불법파견 소송취하를 전제로 진행되는 특별채용은 정몽구의 불법파견 범죄를 축소은폐, 증거인멸

▶ 특별채용 인원이 1049명이면, 1049명의 불법파견 소송자가 사라지는 구조

▶ 특별채용을 통해 소송자가 줄어들면,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범죄에 면죄부가 생김.  
불법파견의 피해자가 사라지면, 가해자인 정몽구 회장의 죄도 사라지는 구조가 바로 특별채용이다.

▶ 법원에서 판결 한 체불임금(정규직과의 임금차액) 전액 포기, 법원판결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근속 인정이 되지만, 특별채용의 경우 1/2 정도만 인정

2) 법원 판결과 특별채용 합의 내용 비교 및 특별채용의 문제점

구분	법원판결 내용	특별채용 합의내용	문제점
대상	기아자동차 모든 사내 하청 공정은 불법파견, 불법파견 공정에서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판결!	사측이 주장하는 직접공정만 대상으로 함. (직접공정에 대한 법적근거 전혀 없음. 법원은 직접, 간접, 사외물류 모두 정규직으로 판결	정규직화 대상을 직접 공정으로만 한정. 간접 공정 조합원 배제
규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소하, 화성, 광주 총 1049명	전원 정규직이라는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
소송	1차 소송조합원 1심과 2심 법원에서 전원 승소!	채용된 인원의 소취하 및 이후 소송불가, 소취하자 1250만원 지급	개인의 자유인 소송권을 침해. 수천에서 수억에 이르는 체불임금(08~18년 10년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액분) 포기를 강요
근속	입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근속 인정	근속 최대 10년만 인정 (법원 판결 근속의 60% 정도만 인정)	근속 축소로 호봉, 근무형태 변경 수당, 퇴직금 등이 대폭 삭감되어, 정년퇴직 때까지 엄청난 금전적 불이익을 초래
방식	현재 일하는 공정과 인원을 동시에 정규직 공정과 인원으로 전환	공정 따로, 인원 따로, 1049명의 전환 배치로 엄청난 혼란 발생	불파공정(직접공정)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신규채용에 들지 못하면, 자신이 일하던 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됨.

<성 명>

**기아자동차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백주대낮에 사람을 때려도 재벌의 폭력은 묵인될 수 있는 것인가!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 지회 화성공장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사측은 연일 본청 관리자들을 수백 명 동원해 폭력을 휘둘렀다. 어제(8/30)는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집어 던져서 심하게 다친 사람들이 속출했다.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척추 12번 뼈가 골절돼 입원해 있는 상태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며 사측에 요구한 것은 불법파견과 강제전적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 소송에 대해 2014년과 2017년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내린 후에도 여전히 기아현대차그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기아차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특별채용-신규채용이라는 편법으로 마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양 포장하였다.

그러나 기아차 특별채용의 경우 비정규직들이 대상자에 모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일하던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자신이 하던 일자리에서 강제로 쫓겨나 더 노동조건이 안 좋은 곳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야 했다. 임금이 삭감되고 산재를 당하기도 했다.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성공장의 경우, 회사는 2018년 특별채용을 실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0년 넘게 일하던 공정에서 강제 전적시키려 하고 있다. 회사가 강제 전적시키려는 공정에는 다수의 여성비정규직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얼마 전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가 권고한 내용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행정개혁위는 불법파견이므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고용노동부가 내릴 것을 권고했다.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하는 일이다. 기아차 비정규직은 행정개혁위의 권고를 기반으로 ‘강제전적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청 직접교섭’을 내걸고 파업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기아차는 오히려 정당한 파업행위를 조직적인 폭력으로 방해하였다. 원청관리자들이 순회 중인 노동자들을 가로막으며 폭력을 행사했다. 벌써 3주 동안 이러한 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정부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 식칼테러가 횡행했던 70년대 80년대가 아닌 2018년에 재벌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정부 탓이다. 그동안 정부가 재벌의 눈치를 보며 불법파견에 대

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가 권고할 정도로 정부는 기아현대차 재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이 연일 나왔지만 고용노동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서 불법파견 범죄가 진행될 수 있었듯이, 정당한 파업행위에 대해서도 사측관리자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이렇게 짓밟힐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노동자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없고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집행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아차 사측의 폭력이 갈수록 심해진 것은 고용노동부의 수수방관 탓이다. 노동자들이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도록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요구한다.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강제 전적을 중단하라!**

**정부는 파업 중인 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인 폭력 등을 조사하라!**

**고용노동부는 행정개혁위의 권고인 불법파견에 대해 당장 시정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8월 31일

단체: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문화연대, 손잡고,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노동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Progressive Korea,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민중공동행동,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문예창작단 들꽃, 대안문화연대, 극단 새벽, 일과 노래, 노동예술단 선언, 파견미술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문화연대 사회예술네트워크<나모지>, 인권운동공간 활, 다산인권센터, 장애여성 공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삼성전자써비스지회, 아사히 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현대차판매연대노조, 광주부품사비정규직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기룡전자분회, 현대제철 당진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순천비정규직지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정리해고철폐!비정규직 철폐!노동3권 쟁취!노동자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 정의당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세종호텔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노조, 콜트콜텍지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민변노동위, NCK인권센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정의당 광명갑, 진보연대, 진보평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학술단체협의회, 민중연대, 진보연대, 서울교통공사노조, 민주화운동계승연대 (무순, 전국 83개 시민사회단체)

개인 : 문화활동가 박준 전경진 류금신 임정득 이사라 지민주 박성환 조성일 김가영 백승수 구영희 이수진 (총12명)